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나44226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나4422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8가단521643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전효철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김성훈

변론 종결 2020. 12. 15.

판결 선고 2021. 1. 2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8가단5216431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7. 12. 12. 접수 제70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보조참가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소송을 수계하면서,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민법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기한 부인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에 기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취하하였다¹⁾].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17. 4. 28.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A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93,500,000원, 보증기한 2022. 4. 2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A의 대표이사인 B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이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3) A은 2018. 7. 10.경부터 D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10. 10. D에 A의 대출금 채무 92,602,834원(= 원금 91,525,640원 + 이자 1,077,1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같은 날 267,040원을 회수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73원의 확정손해금 발생).

나. B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 1) B은 2017. 12. 11.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55,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①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2017. 2.경부터 2017. 11.경까지 A에 공급한 PVC파이프 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35,111,16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만원 및 자신이 부담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1,856,692원도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2017. 12. 12. B에게 나머지 13,032,148원(= 55,000,000원 - 35,111,160원 - 5,000,000원 - 1,856,692원)을 지급하였다.

다. B의 파산신청과 원고의 소송수계

1) B은 2018. 11. 4.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4673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8. 12. 10.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10. 15.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이 B이 파산하자 원고가 2020.

1. 7.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2020. 4. 8.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 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등 참조).

나. 부인대상 행위의 성립 여부

1)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2, 13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F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의 채무가 아닌 A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원고보조참가인 등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은 위 처분행위로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B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① B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은 345,600,265원(= K 채무 14,376,000원 + L카드 채무 5,703,000원 + M카드 채무 13,117,000원 + N은행 전세자금대출채무 96,000,000원 + 기업은행 보증채무 104,623,000원 + 기업은행 채무 4,710,000원 + 원고보조참가인 채무 92,335,000원 + 주식회사 ○ 채무 1,500,000원 + P 주식회사 채무 11,162,765원 + Q 주식회사 채무 2,073,500원) 가량이었다(원고보조참가인의 구상금 채권 발생일은 2018. 10. 10.이나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B의 소극재산에 포함한다).

② 반면 B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은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18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다. B이 대표이사인 A은 당시 자금난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미납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18. 12. 14. 폐업하였으므로 B의 A에 대한 채권이나 주식은 재산상 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③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자신이 보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A의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매각하였고, 당시 A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자금을 투입하여도 회수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B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2월경부터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B은 이미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여 자신이 대표이사인 A의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파산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7. 12. 12. 접수 제70990호로 마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위의 부당성 결여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회적 상당성과 정당성을 갖춘 행위이므로 행위의 부당성이 없어 고의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등 참조).

3)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5,500만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 중 35,111,160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A의 I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상계처리하고,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한 13,032,148원은 자신의 전세자금대출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를 상계처리하고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원은 13,032,148원에 불과한 점, ②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2월경부터 채무의 변제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가 2018. 11. 4.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A도 동일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점, ③ B이 이미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A의 채무를 자신의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면서까지 우선적으로 변제해야만 A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거나 I와의 거래가 A의 영업에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아무런 정황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A과 I 사이의 물품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A의 채무변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한 것으로서 B의 파산채권자들로 하여금 불공평을 감수하도록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선의 주장

-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참조).
- 3) 이러한 법리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실효되었다).

재판장판사김유성

판사최은주

판사정원

별지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